

『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4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4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4월 26일

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김 종 울

나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건축,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위험을 경감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(안 제4조)
 -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
-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및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-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-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, 시민만족과, 도시과 및 건축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조 장 근

- 본 『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』은
 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5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,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